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등의 의견 수렴 의무 신설〉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250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25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5인
- (2) 제 안 일 : 2024. 8. 27.
- (3) 회 부 일 : 2024. 8.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u><신설></u>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u> <u>⑤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2. 검토의견

- 현행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

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¹⁾

- 지금까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고,²⁾ ‘장애인정책종합계획’상 건강 분야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³⁾

현재는 2024년 12월 수립을 목표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음.

-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등(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장애인이 자신과 관련 있는 정책 등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장애인등의 의견수렴 및 참여기회 보장 권리는 우리 국회에서 2008년 12월 비준하고, 2009년 1월부터 발효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전문과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1)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이는 「2023회계연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제도개선’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임.

3)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장애인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전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o) 장애인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책 및 프로그램을 포함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함을 고려하고,

「장애인복지법」 제5조(장애인 및 보호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그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그러한 점에서 당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당연히 거쳐야 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개별적으로 규정할 경우, 그러한 규정이 없는 법률에서는 의견수렴 절차가 소홀해질 염려도 제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관련 일반법인 「행정기본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는 행정의 입법 활동을 위한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8조(행정의 입법활동)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헌법과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의 입법활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2. 법령등의 내용과 규정은 다른 법령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법령등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법령등은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져야 한다.
- ③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이하 “정부입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④ 행정의 입법활동의 절차 및 정부입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신중검토)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건강권법」 등에서 이미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 실익 적음

-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정책에 대한 장애 당사자 등의 참여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개별 정책별로 따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원칙이 퇴색될 우려

* 「장애인복지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또한, 「장애인 건강권법」 제6조에서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음.

* 위촉직 위원 중 1/2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 장애인단체 위원 6인 등 참여

- 특히, 개정안 제6조제5항의 경우, 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까지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하게 되어 있어,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화 될 가능성이 우려됨.

- 각종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한 법령 중 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한 사례가 없음

* 건강검진 종합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아동정책 기본계획 등 다수

□ 현재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

나. 장애인 관련 단체 등⁴⁾

□ 대체로 찬성의견으로 장애인 본인의 의견을 중시하거나,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음.

문 의 처

02)6788-5502

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재활협회